

# 홍보위원회 규정

제정 2000. 04. 06.  
제2차 개정 2021. 04. 1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홍보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내·외 홍보 활동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
2. 각종 입시 홍보자료 제작 기획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대학 광고에 관한 사항(개정 2016.06.21)
4. 신입생 입학만족도 및 입시홍보정책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(신설 2016.06.21)

**제3조(구성)**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입학홍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6.06.21)

**제4조(위원장)**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(개정 2016.06.21)

**제5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7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**홍보팀에서** 관장한다(개정 2016.06.21., **2021.04.16.**)

**제9조(시행)**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**제10조(평가주기/활용)** 신입생 입학 만족도 및 입시홍보정책 조사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,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.(조 신설 2016.06.21)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)

## 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0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외협력자문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498, 2016.06.21)

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34, 2021.04.16)

이 규정은 2021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